

# 부 산 가 정 법 원

## 심 판

사 건 2017느단200130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  
청 구 인 갑 (1989년생, 남)  
부산  
송달장소  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
상 대 방 을 (1986년생, 여)  
부산  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
사 건 본 인 A (2015년생, 남)

## 주 문

1.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.

가. 일시

(1) 2017. 10. 1.부터 2017. 10. 31.까지 : 둘째, 넷째 일요일 15:00부터 18:00까지

(2) 2017. 11. 1.부터 2017. 12. 31.까지 : 매월 첫째, 셋째 일요일 15:00부터 18:00  
까지

(3) 2018. 1. 1.부터 2018. 12. 31.까지 : 매월 첫째, 셋째 일요일 14:00부터 19:00까  
지

(4) 2019. 1. 1. 이후 : 매월 첫째, 셋째 토요일 14:00부터 그 다음날 16:00까지

나. 방법

청구인이 사건본인의 거주지로 사건본인을 데리러 가서 사건본인을 인도받아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면접교섭한 후 사건본인의 거주지로 데려다 준다.

다. 상대방은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
2.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### 청 구 취 지

청구인은 매월 첫째, 셋째 토요일 14:00부터 20:00까지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사건본인을 만날 수 있다. 상대방은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# 이 유

1. 인정사실

다음의 사실은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.

가.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5. 5.경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7. 2.경 이혼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하였는데, 자녀로 사건본인이 있다.

나. 위 조정에서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상대방이 지정되었고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향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였으나, 그 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하지 못하였다.

## 2. 판단

사건본인의 나이, 양육상황, 청구인과 상대방의 혼인생활과 파탄 경위, 이혼 후 현재까지의 경과 등 기록과 심문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, 주문과 같이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하도록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적합하다.

따라서 청구인의 면접교섭청구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.

2017. 9. 26.

판사 박 무 영